



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

[시행 2023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36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장애인고용과), 044-202-7489

I.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

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